

[解　　설]

## 國際漁業環境의 變化動向

金　成　采

水產廳 遠洋開發課長  
(1993년 6월 10일 접수)

### I. 序　　言

海外漁場을 操業區域으로 하는 遠洋漁業은 800隻의 漁船과 22千名의 漁船員이 出漁, 1991年에는 873千M/T을 漁獲하여 이중 714千M/T을 國內에 供給하고 殘余 169千M/T을 輸出, 外貨 535百불을 獲得한 重要產業의 하나이다.

이 生產量은 참치類 274千M/T(31.4%), 명태 177千M/T(20.3%), 오징어 271千M/T(31.0%), 底棲魚 125千M/T(14.3%), 其他 26千M/T(3.0%)으로 構成되어 있다.

遠洋漁業은 海外漁場을 利用하고 主로 外國港을 漁業基他로 하며 國際去來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漁場의 管理, 船舶의 運航, 漁船員의 活動, 漁業者의 漁業經營等 多方面에 걸쳐, 沿岸國과 國際漁業機構의 漁業規制等 國際環境 與件을 必然的으로 考慮하게된다.

本稿에서는 遠洋漁業生產量과 크게 關聯되는 國際 漁業規制動向 가운데서 참치, 트롤 및 오징어漁業規制와 유엔環境開發會議等 動向에 關하여 記述하고자 한다.

### II. 沿岸國의 200海里宣布 動向

UN 海洋法協約案에 對한 協議가 進行되는 가운데 1977年 宣布된 美, 日, 苏, 加等 排他的 經濟水域은 現在까지 143個 沿岸國中

112個國이 領海, 漁業專管水域, 排他經濟水域等의 形態로 自國 海岸線으로 부터 200海里水域에 걸쳐 海洋生物資源에 關한 主權的 權利를 行使하고 있다.

1982年 UN海洋法 協約이 採擇된 以來 이 協約의 批准書를 UN에 提出한 國家는 1990. 1. 1現在 인도네시아, 아이슬랜드, 브라질等 51個國에 達하고, '93年까지는 60個國 以上이 批准할 것으로豫想되어 同 協定은 멀지않아 發効될 것으로 展望된다.

排他的 經濟水域의 特性은 沿岸國이 海底의 上部水域 및 海底 그밀의 天然資源의 調查, 開發, 保存 및 管理를 為하여 主權的 權利와 同水域의 經濟的 深查와 開發 및 其他活動에 關한 主權的 權利를 갖는다. 또한 沿岸國은 自國의 排他的 經營水域에 있어 生物資源의 漁獲可能量을 決定하고 必要한 保存 및 管理措置를 取하면서 그려한 生物資源의 利用에 있어서는 自國이 漁獲可能量의 全體를 漁獲할 能力이 없는 境遇에는 外國에 對하여 漁獲可能量의 餘分을 漁獲토록 許容한다. 高度回遊性魚種, 兩立種에 對하여는 沿岸國과 操業國等이 保存 및 管理措置에 協力토록 되어있다.

우리나라 遠洋漁業은 1977年 以來 約 12年間 韓·美漁業協定에 依據 北太平洋 美國 經濟水域內에서 主로 명태漁獲権리를 割當 받아왔다. 그러나 剩餘量을 數年間 外國에 割

當하여 온 美國은 最近에 多數 大型트롤漁船이 操業함으로써 自國漁船에 의한 漁獲이 可能하여 外國에 對한 쿠타를 1988年부터 終熄하였다. 이와 같은 200海里 資源自國化 政策은 1987年 大西洋 모리타니아水域에서도 볼 수 있다.

現在 入漁料支拂 方式에 의한 沿岸國 入漁가 이룩되고 있는 國家는 約 28個國으로 政府間 漁業協定에 의한 入漁가 8個國, 民間 베이스 入漁契約에 依한 入漁가 20個國에 達한다. 入漁料 支拂實績은 다음表와 같다.

遠洋漁船 入漁料 支拂實績				(單位: 千\$)
區分/年度	'88	'89	'90	'91
支拂額	20,300	26,731	32,243	36,349
增加率 (%)	100	132	159	179

### III. 参치漁業

世界 參치類漁獲量은 年間 約2百萬噸에 達하여 世界 海洋魚類 揚陸量의 4%를 占한다. 1988年度 海洋別 揚陸量은 印度洋 18.8%, 太平洋 65.5%, 大西洋 15.7%로 分布되었다. 이러한 參치類의 國際 資源管理機構는 數個에 達한다.

#### I. 全美熱帶參치委員會(IATTC)

이 機構는 1949年 美國과 코스타리카에 의해 協定으로 組織되어 1950年 發効하였다. 現在 會員國은 美國, 코스타리카, 불란서, 日本, 니카라과, 파나마, 바누아투로 되어 있다. 委員會 共同經費를 充當하는 國別 分擔金은 美國이 2,835千불, 日本이 101,380불을 負擔하고 4個國은 實績이 없다.

管割水域은 協定上 東部太平洋으로 規定하고 있으나 黃だ랭이 資源管理를 為해 西經 90度에서 125度와 北緯 40도 30분에서 南緯 30度까지를 階段式으로 區劃한水域을 委員會

會가 黃だ랭이 規制水域(CYRA)으로 設定하여, 이 水域內의 黃だ랭이, 가다랭이 資源에 關한 自然的 要因과 人間의活動에 依한 豐度의 影響을 調査하여 最大持續的 漁獲量을 維持하는데 必要한 保存措置를 各國 政府에 勸告하고 있다.

科學調查의 根幹을 이루는 漁業資料는 世界 參치管理機構中 가장 좋은 資料로 報告되어 있다. 協定水域內 總漁獲量은 100%로 推定되고 旋網 및 채낚기漁船의 操業日誌 回收率은 90~95%에 達한다. 科學調查資料의 精度가 높은 것은 委員會 事務局職員과 業界의 意思流通이 緊密하여 地域內 揚陸地에 統計技術者를 常駐시키고 委員會가 提供하는 資料에 業界가 信賴性을 갖는 點이다.

1961年에 委員會는 黃だ랭이 規制水域內의 黃だ랭이 漁獲ку타를 勸告하였으나 勸告履行問題에 많은 論難을 거친 뒤 1966年에 비로소 漁獲ку타가 設定 導入되었으나 1979年에 黃だ랭이 規制는 中斷되었다. 委員會는 1989年에도 220千t의 쿠타를 勸告하였으나 委員會의 勸告에 帶하여 會員國과 非會員國이 이를 遵守할 義務가 없으며 基本的으로는 멕시코가 1978年 同 委員會를 脫退함으로써 黃だ랭이 規制管理는 弱化된 狀態에 있다.

#### 2. 大西洋 參치資源 保存委員會 (ICCAT)

1966. 5 FAO는 大西洋 參치類 保存에 關한 委員會設置를 為하여 17個國 全權 代表者會議를 周旋함으로써 大西洋 參치資源 保存에 關한 協定이 採擇되었고 同 協定은 1969年에 發効케 되었다. 現在 會員國은 韓國, 스페인, 美國等 22個國이다.

委員會는 附屬海를 包含하는 全 大西洋에 分布하는 參치類를 對象으로 資源의 豐度, 魚類의 生物·生態, 海洋環境, 自然的, 人為的要因에 依한 資源影響等을 調査·研究하고 最大持續的 漁獲量을 許容하는 資源維持에

努力하고 있다. 이에 必要한 年間豫算是 1990年 900千불로써 各國의 참치漁獲量, 통조림生産量, 總國民所得 比率에 따라 策定하는 政府의 分擔金으로 充當되며 우리나라에는 30,400 \$을 支拂한 바 있다.

委員會의 資源管理 措置에는 2個의 方法을 採擇하고 있다. 委員會의 調查統計 常任委員會는 最大持續的 漁獲을 許容하는 水準에서 資源을 維持하는데 關聯되는 生物學的 資料를 分析하고 管理方案을 마련하여 委員會에 報告하면 委員會는 이를 魚種別 폐널에서 審議케 한다. 폐널이 生物學的 資料와 社會, 經濟 및 政治的要因을 考慮하여 管理措置를 委員會에 勸告하는 境遇 同 措置는 委員會에서 投票로 決定되며 各 會員國의 受諾으로 6個月後 發効한다. 異議申請 條項이 協定에 規定되어 있다. 現在까지 ICCAT에서 施行中인 規制措置 內容은 다음과 같다.

황다랭이 : 最小體重 3.2kg以下 漁獲制限  
눈다랭이 : 最小體重 3.2kg以下 漁獲制限  
참다랭이 : 最小體重 6.4kg以下 漁獲制限, 西部太平洋에서는 2,660M/T 漁獲 quota 以外의 참다랭이 漁獲禁止, 東部大西洋에서는 1974年 水準으로 漁獲死亡 制限, 멕시코灣에는 產卵魚 主對象 漁獲금지, 西部大西洋의 漁獲努力을 東部大西洋 쪽으로 移入禁止, 體長 120cm以下의 漁獲量은 全體 참다랭이 漁獲量의 15%로 制限

황새치 : 北緯 5度以北의 水域에서 25kg以下의 黃새치 漁獲死亡을 現水準에서 減縮, 25kg以下の 黃새치漁獲과 揚陸을 禁止, 全大西洋에 걸쳐 黃새치 漁獲死亡을 1988年 漁獲量水準으로 制限

### 3. 南太平洋 委員會(SPC)

南太平洋 委員會協定은 1947. 6. 締結되어 1948. 6. 發効되었다. 會員國은 휘지, 뉴질랜드, 쿡제도, 키리바티, 솔로몬, 불란서等

27個 南太平洋島嶼國 또는 海外領土 管割國이며 委員會는 뉴칼레도니아에 設置되어 있다. 委員會는 會員國에 對하여 農業, 通信, 漁業, 市場, 交易, 教育, 保健等 多方面에 걸쳐 協議 諮問에 應한다.

漁獲分野에서는 참치 및 새치類評價計劃(TBAP)을 通하여 참치類에 對한 生物學的 資源評價가 進行되어 왔다. 委員會는 켄버라 協定上 참치統計를收集할 權限이 없으나, 포럼漁業機構와의 協約에 따라 美國으로부터의 資料를 FFA로부터 提供받고 餘地 遠洋漁業國 資料는 SPC가 直接收集하고 있다.

### 4. 포럼漁業機構(FFA)

이 機構設置에 關한 協議는 1976年 나우루의 南太平洋 포럼 7次 會議에서 참치漁業機構設置를 協議하였다. 1977年 南太平洋 포럼 會員國들이 自國의 200海里 水域內 生物資源에 對한 主權의 權利認定을 主張함으로써 이條項을 包含한 南太平洋 포럼漁業機構 協定이 1979年 承認되었다. 現在 FFA會員國은 南太平洋에 位置하는 國家로 制限되어 南太平洋 포럼委員國인 호주, 쿡제도, 휘지, 뉴질랜드等 16個國이다.

FFA機構는 포럼漁業委員會 및 事務局으로構成되어 域內漁業管理의 調整, 遠洋漁業國과의 關聯增進, 漁業의 團束, 魚類加工 및 市場擴大, 外國과의 200海里水域 入漁等을 맡고 있다. FFA의 義務는 高度回遊性魚種에 關한 資料의收集, 分析, 配布, 他國의 管理, 法制, 協定等 資料收集과配布, 漁業政策交換, 許可狀發給, 入漁料徵收 및 監督, 團束에 關한 支援, SPC等과의 協力發展을 圖謀한다.

FFA의 主要事業은 遠洋漁業國과 會員國間의 入漁協商 支援, 漁船의 登錄, 漁業團束體制의 設定과 審議等이며 漁船의 登錄體制, 美國과의 多者間 協定을 除外하고는 事業活

動이 制限의이다.

### 5. 참다랭이 3國協定

1981年 호주, 뉴질랜드, 日本의 科學者들은 참다랭이 潛在資源量의 減少는 3個에 對하여 深刻한 關心이 될 것이라고 合議함에 따라 1982年 부터 3國의 科學者 및 行政家들은 참다랭이 資源狀態를 每年 檢討하고 翼年 漁期의 管理措置에 合議하였다.

科學者들은 1983年 참다랭이 產卵資源量은 220千M/T 水準으로 維持되어야 함을 勸告하였고 그해부터 年例會議를 通하여 漁獲量 制限을 遵守케 되었다. 現在까지 참다랭이 資源狀態에 關하여 科學者의 意見一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暫定協約은 어려움이 있다.

호주科學者들은 現在의 6,250M/T 漁獲水準은 資源回復에 不利하게 資源量을 減少케 한다하고, 뉴질랜드 과학자들은 호주와 같은立場을 取하고 있으나 日本 과학자들은 別途의 파라미터와 假定으로 現 漁獲水準이 持續되는한 참다랭이의 資源量은 增加할 것이라 主張하고 있다. 이 3國間 協定은 科學者會議에서는 純粹한 科學的 接近을 模索하고 있음에도 技術的 問題解決에 있어서는 各國의 立場을 否定하지 못하는 點이 있다.

### 6. 東部太平洋 參치管理 機構 (EPTA)

東部太平洋 參치漁業協定은 美國, 파나마, 코스타리카, 혼두라스, 카테말라가 草案을 作成하였으나 아직 發効되지는 않고 있다. 이 協定의 目的是 各國의 同等한 操業이 實現되는 漁業資源의 合理的 開發과 漁業 許可制度를 規定하고 있다. 協定은 5個國이 署名하였으나 批准書 寄託國이 5個國에 未達되어 있다. 理事會가 運營하는 東部太平洋 參치機構가 設定케 되고 沿岸國家의 加入 또는 IATTC會員國의 加入이 許容된다.

### 7. 東部太平洋 參치漁業機構 (OAPO)

라틴아메리카 漁業開發機構와 南太平洋 常設委員會는 東部太平洋 參치管理機構設立을 推進中이다. 協定이 採擇되었고 4個國의 批准書 寄託이 있을 경우 發効될 展望이다. 東部太平洋 沿岸國 및 操業國이 加入할 수 있으나 非沿岸國은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同 機構의 目的是 高度 回遊性魚種의 保存, 保護 및 最適利用을 實現하고 라틴아메리카 東部太平洋 後進沿岸國의 人力訓練, 技術移轉, 漁獲向上 및 下部構造發展을 支援하는데 있다.

### 8. 南太平洋 날개다랭이 協商

1980年代 後半부터 南太平洋 島嶼國들은 날개다랭이 操業擴大에 關心을 두어왔으며 1989年에는 日本, 韓國, 臺灣等 遠洋漁業國의 流刺網漁船 出現에 대하여 同 漁業의 影響을 카나다, EC, 불란서, 英國, 美國等과 協議한 後 所謂 웰링톤協定이라 하는 大型 流刺網漁業 禁止에 關한 協定을 締結함으로서 南太平洋 날개다랭이 管理體制에 焦點이 모아져 있다.

1989年 以來 沿岸國과 操業國間에 南太平洋 날개다랭이 管理體制에 關한 國際協議가 4次에 걸쳐 進行되고 있다. 懸案은 會員國資格에는 流刺網使用國을 排除하고 南太平洋의 모든 島嶼國은 會員이 되는 점, 管理對象魚種, 新 管理機構設置, 拒否權認定, 資料의 要件, 읍서버 및 檢查員 乘船, 主權의 權利와 管理機構의 機能關係 等이다.

### 9. 西部印度洋 參치機構(WIOTO)

西部印度洋 沿岸國은 西部印度洋 參치機構設置에 關한 協定을 採擇하고 3個國이 批准嶼를 寄託하면 發効도록 하였다. 事務局은

## 金　　成　　采

세이셀에 設置키로 되어있고 北緯 11度 東經 85度間의 北竿 水域을 除外하면 FAO統計海域 51海區를 適用對象 海域으로 한다. 會員國은 沿岸獨立國에 局限하고 南太平洋 포럼 漁業機構와 같이 漁業政策의 統一化, 遠洋國과의 入漁協商支援 및 漁業開發에 重點을 두고 있다.

### 10. 印度洋 參 치 委員會(IOTC)

1986年 印度洋水產委員會 第 9次 會議에서 印度洋에도 參 치 資源을 管理할 수 있는 參 치 委員會를 設置할 必要性이 認定됨에 따라 1989年에는 FAO가 參 치 委員會設置를 為한 協定案을 作成 關係國會議를 開催하였으나 EEC의 會員國資格, 沿岸國의 主權의 權利認定, FAO와 參 치 委員會와의 關係 問題等으로 合議를 보지 못하였으나 '92. 6. 22~6. 26間 FAO本部에서 印度, 韓國, 호주等 28個國 代表들이 다시모여 印度洋 參 치 委員會 設置 協定案의 採擇에 關한 會議가 開催된바 있다.

印度洋의 參 치 漁獲量은 1982年 191千M/T에 서 1990年 744千M/T으로 急增함에 따라 資源의 保存, 管理를 為하여 FAO가 1989年 會議에서 提起된 問題를妥結하고 UN海洋法 協約 第 64條에 따라 高度 回遊性 參 치 資源에 關한 沿岸國과 操業國의 國際機構設立等 協力義務規定을 勘案하여 이 會議를 開催하였다.

이번 會議結論은 前文 및 23個 條文으로 構成된 協定案을 採擇하고 이를 FAO 第 102次 理事會에 上程 承認을 받도록 하였다. 그 렇게되는 境遇 1993年에 全權 代表者 會議를

通해 協定에 署名케하고 10個國 批准時 發効케 된다.

協定案의 要旨는 協定水域은 印度洋으로서 FAO 統計水域 51 및 57海區와 南冰洋收斂線을 包含한 印度洋 附屬海로 한다. 豪다랭이, 눈다랭이等 16個 魚種을 對象으로 하며 會員國은 印度洋沿岸國, 印度洋 統治領의 外交權 行使國, 參 치 操業國, 地域 經濟統合機構, 其他 國際 原子力機構等의 加入國으로 開放되어 있다.

會員國은 資源狀態의 把握 및 統計資料의 收集分析, 評價, 調查 및 漁業開發의 勸獎, 調整, 資源保存管理 措置의 採擇 施行, 開發途上 沿岸國의 經濟社會的局面을 把握함을 主要機能으로 한다.

## IV. 公海 特種漁業

### I. 베링公海 명태트롤漁業

美·러시아 海岸國의 經濟水域으로 둘러쌓인 베링公海(中部베링海, DONUT HOLE)는 全體 베링海面積의 約 10%를 차이한다. 이水域 명태漁業은 韓國, 日本, 폴란드, 中國이 美政府로부터 명태漁獲권을 割當받아 操業하던 1982年부터 다음表와 같이 명태漁獲量을 增加시켜왔다. 이 表에서 보이는 年間 명태漁獲量은 美國과 러시아의 베링海 經濟水域內 年間명태漁獲量의 1/3程度이다. 이點이 兩沿岸國과 遠洋漁業國間에 資源保存 및 管理에 關한 關心을 갖게 하였다.

資源保存 및 管理에 關한 關心이 더욱 高潮되는 가운데 1990. 6. 4 美·소 頂上間의

베링公海 國家別漁獲量

(單位: 千噸)

	'85	'86	'87	'88	'89	'90	計(86-90)	比率(%)
韓國	82	156	242	269	342	244	1,253	21.2
日本	136	698	803	750	655	495	3,401	57.5
폴란드	115	163	230	300	264	223	1,180	19.9
中國	2	3	4	18	31	27	83	1.4
計	336	1,020	1,279	1,377	1,292	989	5,917	100

“베링海 漁業保存에 關한 共同聲明”이 發表되었다. 이 聲明의 要旨는 兩國이 中部 베링海에서의 非規制 多國漁業局面이 갖는 問題를 檢討한바 漁業 規模는 베링海 年間 總 명태漁獲量의 1/3以上에 達하여 深刻한 環境的 인 關心이 될 뿐만아니라 特히 過多漁獲은 資源에 危險이 있으므로 베링海의 生態界均衡과 베링海 海洋生物資源에 生計를 依存하는 美·쏘 沿岸共同體에 有害로운 結果를 招來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兩國은 이러한 非規制漁業에 對하여 時急한 保存措置를 取함에 合議하였다.

또한 沿岸國 및 操業國을 包含한 모든 國家는 1982年 UN海洋法 協約의 關係條項에 反影되어있는 國際法에 따라 海洋生物資源의 保存을 確保하는데 協力하여야 함에 有意하고 이를 為하여 中部베링海 海洋生物資源의 保存 및 管理를 為한 國際制度의 創出을 為한 協力의 努力を 歡迎한다고 하였다.

第1次 中部베링海 生物資源保存 및 管理會議가 美, 러시아, 韓國, 日本, 中國, 폴랜드 6個國 代表가 參席하여 와싱톤 美國務省 會議室에서 1991. 2. 17~2. 21開催되었다.

會議는 最近의 操業實績에서 韓, 中, 日, 폴랜드 4個國漁船의 單位努力當 漁獲量이 33~57%까지 減少되고 特히 日本의 境遇 90年 11~12月 2個月間 漁獲量이 '89年度 同期 漁獲量 300千ton의 1/2에 不過한 點이 濫獲에 深刻한 關心을 불러일으켜 美, 러시아는 1985年 漁獲水準까지의 削減을 主張하고 나아가 러시아는 自國水準에서도 91年度 漁獲量을 90年度 漁獲量의 30%까지 削減計劃을 밝혔고 日本側도 4個操業國 事前會議에서 1989年度 漁獲水準의 20%까지 削減 '91. 10. 1부터 實施할 意向을 表明하였으나 韓, 中, 폴랜드의 強力한 反撥로 因하여 '91年度에는 現 漁船隻數凍結이 妥結되었다. 또한 決意內容中 重要한 事項은 명태資源에 關한 緊急한 保存措置의 必要性을 認定하고 1989年 移

轉 操業國外 第3國의 新規進出 및 第3國籍船入漁를 抑制하고 漁獲資料提出, 옵서버 및 檢查員乘船, 自動位置發信器設置等을 計劃樹立토록하였다.

以後 第2次 會議~第4次會議가 美,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提案에 對한 操業國의 自律減隻 方案이 맞서 進行되어 왔으나, 1992. 8. 12~14 모스크바에서 開催된 第5次 會議에서 各國은 베링公海 명태操業을 1993~1994年 2個年間 自律原則에 따라 中止토록 共同 決議하였다. 이는 公海上의 명태漁獲이 1989年 1.4百萬ton에서 그동안 顯著히 減少되어 1992年 上半期中 漁獲實積은 11,000ton에 不過하고 1991年, 1990年 同期 漁獲量 170,000ton, 503,000ton보다 急激히 減少한 實績을 考慮한 것이다.

이 漁業中止 期間中 6個國은 資源監視計劃을 實施하여 獲得한 情報는 各國間에 共有키로하고 調査船舶에 의한 科學調查에는 音響調查, 中層트롤調查, 生物學的 Sampling, 卵調查를 包含하며, 各國은 2隻以內의 商業漁船으로 國內外 科學者 옵서버를 乘船케 하여 試驗操業을 實施한다. 또한 科學者들이 資源構造 研究와 資源評價 모델을 開發토록 함과 同時に 1995年初 以前까지 長期協定體制를 結論짓도록 하였다. 特히 6個國은 第3國 進出과 第3國籍船의 入漁를 抑制키로 하였다.

## 2. 오호츠크公海 명태漁業

오호츠크海 面積의 2.7%를 獻이하는 오호츠크公海는 러시아의 排他的 經濟水域으로만 둘러쌓이고 오호츠크海에서 產卵하는 3個의 명태魚群이 混合分布하는 地域이다. 日本은 公海上에서 1987年부터 160ton 以下의 漁船을 出漁시켜 制限의規制를 實施하여 왔으나 韓國, 中國, 폴랜드의 大型 트롤漁船들이 1991年에 公海漁業을 始作함으로서 명태資源 保存 및 管理에 關한 沿岸國과 操業國의 關心이 크게 높아졌다.

1992. 3. 2~3. 4 모스크바에서는 韓國, 中國, 日本, 러시아, 폴랜드 5個國 代表의 中部오호츠크海 生物資源保存에 關한 協議가 있었다. 沿岸國의 優先的 保存 및 管理權, 操業國의 公海漁業權 및 經濟·社會的 問題等이 爭點으로 擡頭되어 러시아측이 提出한 모라토리움 問題는 妥結되지 못한 狀態에서 會議가 終了되었다.

## V. 北洋오징어流刺網漁業

우리나라의 北太平洋 빨강오징어流刺網漁業開發은 1979年 試驗操業 成功으로 1980年에 14隻이 出漁한 以後 每年 隻數가 增加되어 1989年에는 最大 156隻까지 操業하여 漁獲量은 112千 M/T에 이르렀다. 이 漁獲量은 우리나라 오징어 全體 漁獲量의 33%를 차지하였다.

北太平洋公海에서 流刺網操業의 國別出漁 척수 및 漁獲量은 아래 表와 같다.

(單位: 隻, 千噸)

國別	年度	'88	'89	'90
韓國	隻 數	150	156	142
	漁獲量	84	112	98
日本	隻 數	463	460	457
	漁獲量	158	96	106
臺灣	隻 數	92	167	438
	漁獲量	9	42	36
合計	隻 數	705	783	737
	漁獲量	251	250	240

### I. 1989年度 UN決議

1989. 7. 11 호주, 뉴질랜드 및 南太平洋 島嶼國들은 南太平洋 날개다랭이 流刺網漁業에 反對 決議를 하였다. 同年 11. 2 美國이 호주, 뉴질랜드等 流刺網 反對國家들과 함께 流刺網漁業 禁止決議案을 UN에 提出하고 日本도 對應決議案을 提出함으로써 1989. 12.

22 美, 日協商 草案이 第44次 UN總會에서 決議되었다.

規制 決議內容은 會員國은 海洋資源의 保護管理에 關한 國際協力を 強化하여 流刺網漁業에 對한 科學的 資料의 收集과 交換을 促進하고 1991. 6. 30을 期限으로 流刺網의 影響에 關한 科學的 資料를 檢討하여 必要時 規制와 監視에 關하여 協力할 것을 促求하면서 ① 北太平洋, 其他 公海上에서는 流刺網漁業 擴大는 卽時 中止하고 ② 南太平洋에서는 暫定措置로써 流刺網漁業을 漸次 縮小하여 1991. 7. 1부터 操業을 中止하고 ③ 關係國 共同으로 科學的 分析에 根據하여 流刺網漁業에 依한 惡影響을 防止하기 為한 保存管理措置가 取해질 境遇에는 取消한다는 條件으로 1992. 6. 30까지 모라토리움을 實施할 것을 勸告하였다.

以後 第 45次 UN總會에서는 第 44次 UN總會 決意를 再確認하고 流刺網漁業이 海洋生物資源에 미치는 影響을 持續的으로 調査·研究토록 勸告하였다.

### 2. 韓·美 流刺網漁業 自律規制 合議

1989年 UN總會 決意가 있기 前인 1989. 9. 26 韓·美兩國은 北太平洋公海上의 流刺網自律規制에 合議하고 이를 1992年末까지 延長施行하고 있다. 主要內容은 最大出漁隻數는 160隻으로하고 漁網目은 86mm以上 使用하며 操業船 및 運搬船은 自動位置發信器를 設置하고 月別 操業水域을 遵守도록 되어 있다. 漁船의 操業監視 및 資料收集을 為하여 韓國指導船과 美國指導船을 派遣하고 漁船에는 科學者를 옵서버로 乘船토록 하였다.

### 3. 1991年 UN總會 決議

公海上 流刺網漁業이 無差別, 浪費的漁業으로서 海洋生物資源의 保存 및 管理를 威脅하는 것으로 認識하여 1989年부터 流刺網漁

業의 操業中斷을 強力히 推進하여온 UN은 第 46次 總會에서 1991. 12. 20 “大規模表層 流刺網漁業 및 同 漁業이 世界 海洋生物 資源에 미치는 影響”이라는 議問를 決議케 되었다. 同 決議 運營條項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會員國은 1992. 1. 1부터 現行 大規模表層 流刺網漁業의 漁獲努力을 減縮하되 1992. 6. 30까지 特히 關聯船舶의 隻數減隻, 漁網길이 短縮 및 操業水域 短縮을 包含하여 漁獲努力을 50%減縮한다.

② 會員國은 大規模表層 流刺網漁業의 操業水域을 擴大하지 아니하며 1992. 1. 1부터 전항에 依據 더욱 縮小할 것을 繼續保障한다.

③ 會員國은 모든 大規模表層 流刺網漁業에 關한 世界的인 모라토리움은 1992. 12. 31까지 世界海洋의 公海上에서 全面的으로 施行할 것을 保障한다.

④ 이 決議事項을 遵守하여야 할 重要性을 再確認하고 國際社會의 모든 會員國이 公海上에서 大規模表層 流刺網操業을 防止하기 為하여 個別의, 共同的 措置를 取할 것을 勸獎한다.

⑤ UN事務總長은 이 決議事項의 履行에 關한 報告書를 第 47次 UN總會에 提出할 것을 要請한다.

以上의 UN總會, 決議事項에 對하여 我們나라는 UN會員國으로서 國際的 孤立을 避하고 會員國間 友好關係를 考慮하여 이를 遵守하고 있다. 이에따라 船舶의 減隻, 채낚기, 捧受網等 他漁法으로의 轉換等에 必要한 制度의, 財政的 支援對策이 推進中에 있다.

## VI. UN環境開發會議(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2. 6. 1~14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서 開催된 유엔 環境開發會議는 178個國, 70個國際機構가 參加하여 環境問題와 開發問題를 調和시키기 위한 世界戰略의 理念的 方向을 設定하는 “리우宣言 및 21世紀를 向한 具體的 實踐計劃인 “議題 21”의 文案에 合議하였다. 또한 이 會議의 履行狀況을 檢討, 監視하는 持續的 開發委員會(CSD: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設置키로 合議하였다.

遠洋漁業과 關聯되는 事項은 “議題 21”的 第 17章의 海洋 및 海洋生物資源保護를 들 수 있다. 이와 關聯한 第 4次 準備委員會 結果는 海洋污染防止와 海洋生物資源保護 分野로 大別되는바, 前者의 境遇에는 큰 爭點이 없었으나, 後者의 境遇에는 유엔海洋法協約의 細部事項에 대한 施行規範을 UNCED를 通해서 定立코자 한 沿岸國과 이를 反對한 遠洋漁業국간에 對立이 있었으나, 大體의 인合議가 導出되었다.

### I. 準備會議

公海 生物資源의 利用, 保存에 있어서는 操業國은 國際協定에 依據 基本的으로 旗國主義原則에 따라 各國이 그 履行에 責任을 지되, 그 履行狀況에 대한 檢討는 關聯法 태두리內에서 最小限이어야 함을 主張하였으나 沿岸國은 附隨漁獲까지도 保存 및 管理에 包含하여 嚴格한 遵守와 徹底한 監視體制를 實施토록 主張하였는바 基本的으로 旗國主義原則은 維持하되 報告 및 遵守의 強化를 包含하는 線에서 合議 되었다.

沿岸國은 兩立種(Straddling Species) 및 高度 回遊性魚種(Highly Migratory Species)에 對하여는 排他的 經濟水域 外側의 公海上 過度漁獲(Over fishing)이 資源枯渴을 招來하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嚴格한 規制措置와 沿岸國의 特別한 權限(Preferential Right)을 主張한 反面, 遠洋漁業國은 유엔海洋法 協約의 規定에 따라 沿岸國과 操業國間의 對等한 次元의 協力이 있어야 함을 主張하여 同魚種 등

에 관한協約規定履行問題는 別途의 國際會議를 召集한다는 條項挿入에 暫定合議케 되었다.

國際的 監督 및 監視體制 確立에 있어서는 沿岸國은 地域의, 國際的 協定의 効果의 履行 및 監視體制의 強化를 為한 國際協約 作成을 主張하였으나, 이 事案은 強化된 表現으로 合議 되었다.

海洋哺乳動物 關係는 뉴질랜드등 沿岸國에 國際捕鯨委員會의 모라토리움 延長을 主張하였으나, 操業國의 強한 反對로 同 事案은 國際保鯨委員會 體制下에서 繼續 協議키로 合議되었다.

이러한 背景을 가진 海洋生物資源保護問題는 이번 UNCED會議에서 兩立種 및 高度回遊性魚種 問題處理에 촍점이 集中되어 이들魚種에 對한 유엔海洋法 協約의 効果的 履行을 為하여 유엔主管下에 政府間會議를 早速開催키로 하였다. 이 會議는 特히 FAO의 科學技術的研究를 參考하고, 이러한 魚種의 保存 및 管理와 關聯된 現實的 問題를 確認하고 國家間의 漁業 協力增進 方案도 考慮하여 適切한 勸告案을 作成토록 하였다.

## 2. 議題 21要旨

沿岸과 海洋의 統合管理 및 持續可能開發分野에서는 排他的 經濟水域은 國家의 資源開發 및 保護活動에 重要하나 既存의 管理接近方式은 不完全함으로 앞으로의 目標의沿岸국이 沿岸과 海洋에 對한 統合management와持續開發을 實施하고 統合政策開發, 豫防措置를 推進하는데 두고있다.

이를 為한 活動方案으로서는 沿岸國은 沿岸 및 海洋의 統合management와持續開發을 為한調整體系樹立을 檢討하여 統合management開發計劃을 履行하며 事前環境評價 技術增進, 棲息地保護 및 褐舊를 推進하며 沿岸국이 生物多樣性, 海洋生產性 및 棲息地 保護措置를 採擇하여 データ베이스維持, 環境指標開發等情報收集, 分析能力을 向上하는데 國際機構

가 支援도록 되어있다.

海洋環境保護 分野에서는 海洋環境污染의 70%는 陸上污染源에 起因하므로 事前豫防措置의 効果舉揚에 實踐基盤을 두고 各國의 海洋污染防止 努力의 促求와 開途國의 汚染防止 努力에 對한 週期적 財政支援과 清淨技術開發을 目標로 하였다.

公海 生物資源의 持續적 利用과 保存에 있어서는 유엔海洋法 協約이 海洋生物資源 利用保存에 關한 國家의 權利義務를 規制하고 있으나 公海 漁業관리는 不充分하므로 高度回遊性魚種 및 兩立種에 關한 特別한 管理가 緊要한바, 海洋生物資源의 潛在力 開發, 漁撈方法改善, 危機種 保護 및 科學技術研究增進에 目標를 두었다. 動方案으로는 유엔海洋法 協力에 따른 公海 漁業관리를 實施함에 있어 兩立種 및 高度回遊性魚種에 關한 規定의 効果的 履行, 漁獲魚種의 管理 保存을 為한 協約採擇 및 ガ이드ライン 開發을 為하여, 유엔主管下에 國際會議를 早速開催키로 하였다.

國家管轄權內의 海洋生物資源의 持續的利用分野에서는 8~9千萬ton의 世界漁獲量中 95%가 國際管轄 海域에서 漁獲되므로 海洋生物資源의 持續的利用을 通해 社會, 經濟의受惠를 獲得할 必要性에 實踐基盤을 두고 海洋生物資源의 潛在力 開發, 生物種維持, 魚具使用制限等에 對한 國內的 努力에 目標를 두고 있다. 活動方案으로서는 유엔海洋法 協約에 따라 排他的 經濟水域의 海洋生物資源 保存 및 管理와 兩立種 및 高度回遊性魚種의 關聯問題處理, 小規模漁業의 嘉勵, 有害漁撈方法禁止, 情報收集 交換의 增進, 魚種分析道具開發, 監視 및 評價事業 實施 등을 들고 있다.

## VII. 展望

UN海洋法 協約은 沿岸국이 200海里 排他的 經濟水域制度를 創出·定着시키는데 寄與

하여 왔다. 이에따라 沿岸國 漁獲権의 對外國 配分은 水域內 資源評價와 自國의 漁獲能力에 依存하며 沿岸國은 自國의 漁獲可能性을 考慮하여 單純入漁 傭船, 全體 段資等의 形態로 外國人의 操業을 許容하고 있다.

公海上의 操業問題는 兩立種, 高度 回遊性魚種의 保存, 管理를 둘러싼 沿岸國과 操業國間에 海洋法 協約上의 權利義務關係로 因하여 協議가 多樣하게 進行되는 趨勢에 있다. 人類의 共有資源을 永續的으로 維持管理하면서 漁業을 營爲케하자는 趣旨에서 沿岸國과 操業國은 特히 UN環境開發會議의 合議事項을 契機로하여 新로운 公海資源 管理制度를 向後 數年間 協議, 模索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水產物의 需要是 人口增加, 所

得增大에 따라 持續的으로 增加되는 趨勢에 있고 水產物에 對한 市場開放化가 進行되는 狀態에서 沿岸海水域은 面積이 좁고 海洋污染, 埋立·干拓等 要因이 있으며, 周邊水域에는 韓·中·日 外國漁船間의 競爭操業等需要이 있어 沿近海 漁業生產은 過去의 成長을 持續하기는 어려운點이 많으므로 遠洋漁業은 水產物의 內需供給과 輸出產業으로서의役割이 크게 期待된다.

遠洋漁業의 發展을 為하여는 國際漁業環境에 對應하는 漁業經營의 合理化 推進의 必要性에 立脚하여 國際漁業協力의 強化, 資金의 確保, 漁船 및 漁船員의 管理等을 通하여 既存 漁場의 確保와 新로운 水域의 進出擴大가 繫要할 것이다.